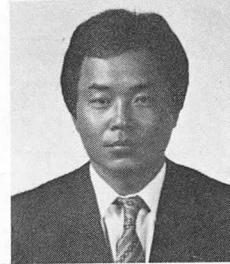




# 해외 가축전염병 방역 현황 및 대책



김 창 섭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

## 1. 머리말

「해외가축전염병」이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는 전염병으로 일명「외래성 가축전염병」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염병 발생 유형이나 발생 상황은 지리적 여건과 그간의 방역정책에 힘입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돼지콜레라, 뉴캐슬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아직까지 종식되지 않고 있음은 부끄러운 일이다. 근간에 해외전염병으로 분류하였던 돼지오제스키병의 발생과 외래성가축질병의 발생 및 동물과 축산물의 교역물량 증가 및 수입선 다양화 추세에 따른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가금 인푸루엔자 등 해외전염병의 국내 유입기회가 증대되어 전염병으로 인한 국내 축산업보호 측면에서 행정당국이나 양축가의 해외전염병 방역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될 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외전염병의 종류, 국내전염병의 발생 유형,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허용 기준과 절차, 해외전염병의 국내유입경로 및 이에 대한 대책을 서술함으로써 임상수의사나 양축가들로 하여금 해외전염병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도모하고자 한다.

## 2. 해외전염병 현황

### 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가축전염병 관리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제정 목적은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동 법에는 가축의 질병 중 주요 질병을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 분류하고 전염병 발생 신고, 검사, 주사, 소독과 격리,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 살처분의 종류와 기준 및 오염물이나 사체의 처분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나아가서 수출입 검역물에 대한 검역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국내 질병과 해외전염병의 방역 및 검역의 제반 근기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나. 법정가축전염병 발생 유형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는 질병은 총 41종으로, 이중 국내 발생 질병과 비발생 질병을 분류하여 볼 것 같으면 표1과 같다.

참고로 국제간 전염병 전파방지 및 방역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수역사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OIE, 프랑스 파리 소재)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위생규정집상의 질병 분류를 볼 것 같으면 표2와 같

〈표 1〉 법정 가축전염병중 국내 발생 질병과 비발생 질병

구분	국내발생전염병 : 25종	국내 비발생 전염병 : 16종
공통	탄저, 결핵병, 부루세라병, 요네병, 유행성뇌염, 오제스키병, 광견병	구제역, 수포성구제역, 부루텅병
소	기종저, 소유행열, 타일레리아병, 바베시아병, 우여, 우폐역, 아나풀라즈마병, 소렙토스파이라병, 소백혈병	출혈성폐혈증
돼지	돼지콜레라, 돼지전염병위장염, 돼지단독, 톡소풀라즈마병	아프리카돼지콜레라, 돼지멧%병, 돼지수포병, 돈두
개	-	
닭	뉴캣슬, 닭전염성 후두기관염, 닭뇌척수염, 추백리, 마이코풀라즈마병	가금인푸루엔자, 가금콜레라
말	마전염성빈혈	아프리카마역, 비저, 구역, 가성피저
기타	부저병	-

은데, 표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질병의 종류가 다양할 뿐더러 어류의 질병을 수의분야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또한 질병 발생시 피해 상태가 크고 동물 및 축산물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List A 질병 중 일부 질병이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차기관계법의 개정시 참고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다.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허가기준

〈표 2〉 국제수의사무국(OIE) 질병 분류

- List A 질병 : 발생시 전파 속도가 빠르고 국제적으로 사회경제와 공중위생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며 동물 및 축산물 교역에 중요한 쟁점이 되는 질병.
  - 구제역, 수포성구제역, 돈수포병, 우역, 반추류 페스트병, 소의 접촉전염병 늄막폐렴, 피부혹병, 리프트밸리 열병, 블루우팅, 양두, 아프리카 말병, 돼지콜레라, 데%병, 가금역병, 뉴캣슬병.
- List B 질병 : 일반적인 질병으로 국내의 경제적 피해와 공중 위생상에 위해를 가져오는 질병으로 동물 및 축산물 교역에 영향을 주는 질병.
  - 공통질병: 탄저, 오제스키병, 포충증, 개필라리아증, 심수병, 렙토스파이라병, Q열병, 광견병, 요오네씨병.
  - 소 : 아나풀라즈마병, 소 결핵병, 트리코모나스증 등 14종.
  - 돼지 : 전염성 위장염, 돼지 브루세라병, 선모충증 등 5종.
  - 말 : 말계두, 비저 등 16종.
  - 양, 염소 : 염소 접종전염성 늄막폐렴, 스크래피 등 11종.
  - 가금 : 닭 전염성기관지염, 마렉병, 전염성후두기관염 등 13종
  - 기타 : 게이슈마니아증

우제류동물(소, 돼지, 양, 사슴, 낙타 등) 및 생산물에 대하여는 구제역, 우역, 우폐역,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비발생국으로서 상기 질병에 대한 예방주사 비설시국이어야 수입이 가능하며, 기타 동물(기제류, 설치류, 조류 등)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는 수입제한지역을 두지 않고 있으나, 교역 상대국에서 가금인푸루엔자나 아프리카마역 등 악성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지역 또는 발생국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한 예로써 84년도에 미국의 가금인푸루엔자 발생시 미국산 조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한 금수조치와 말의 수입시 악성전염병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들 수가 있다.

현재의 수입허용기준과는 별개로 우제류 동물의 생산물에 포함되는 양모와 원피에 대하여는 관련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외교적인 차원에서 수입허용기준을 완화하였는데, 양모에 대하여는 '86년부터 수입을 전면 개방, 현재 우제류 동물의 수입금지국가에서 수입되는 양모는 수출국내 악성가축전염병 비발생지역에서 모집되었음을 수출검역증명서상에 명기도록 하여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만 기타의 가축방역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화란산 원피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입위생조건(소독강화 및 지정장소에서의 수입검역 실시)을 전제로 '88년 2월부터 수입을

허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수입개방은 우리의 축산업 분야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지만,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면서 국내 검역 및 방역기술의 향상과 시설의 보강 측면에서 수입금지 정책만을 고수하는 방법이 옳다고 볼 수가 없어 시행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다각적으로 수입개방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보겠다.

참고로 국제수의사무국(OIE)의 주요 전염병에 대한 비발생국 인정기준을 볼 것 같으면 구제역은 예방주사를 실시할 경우, 최종 발생후 2년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예방주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발생후 6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 비발생국으로 인정한다. 또 아프리카 돼지콜레라는 최종 박멸후 6개월 이상, 우역은 예방접종 없이 최종 발생후 6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동 질병의 비발생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권장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 선진국에서는 자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하여 전염병 비발생 인정기준을 까다롭게 정하고 있어 이해가 상반된다고 볼 수 있다.

#### 라. 우제류 동물 및 축산물 수입 허용 절차

우제류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 허용 절차는 수입 상대국이나 국내 관련 업계로부터 수입금지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OIE 자료나 기타 상대국에서 제시한 해당국의 가축방역 상황을 검토후 수입개방 검토 가능성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 해당국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동국내(同國內) 가축위생제도 및 방역상황을 현지 조사하게 된다. 이때의 조사단은 정부와 학계 연구단체의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조사단의 현지 조사 결과, 수입금지 해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농림수산부내에 대통령령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가축방역대상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수조치 해제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상기 가축방역대책위원회는 농림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가축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임명한 15인 이내의 위원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입 교역문제 이외에도 국내 방역대책수립이나 검역방법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행정의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상기 가축방역대책위원회에서 수입금지 해제안이 의결되면 해당국과 수출입검역에 필요한 위생조건을 제정·고시하고, 상공부의 대외무역법에 의한 통합공고를 개정하여 무역업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입허용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한다.

수입위생 조건의 내용은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기간, 생산지 농장의 위생상황, 검사하여야 할 전염병 및 검사방법, 소독방법, 선적 및 수송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동 위생조건은 필요시 상대국과 협의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 검역방법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예로는 '87년도 국내 돼지오제스키병 발생에 대한 조치로 교역상대국의 돼지검역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동(同) 병에 대한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반면에 오제스키병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의 돼지에 대하여는 국내 도착후 종래 15일간 검역하던 것을 30일로 연장, 검역을 실시토록 한 바도 있다. 이와 반대로 상대국에 위생조건상 규제하고 있는 질병이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인정되면 수출검역시 해당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대신, 비발생 증명만으로 대체토록 하는 경우도 있다.

연도별 우제류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허용국 내용과 현재 고시로 제정·운영되고 있는 수입위생 조건은 다음과 같다.

〈표 3〉 우제류 동물 및 축산물 수입허용국

○'80년 이전	미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만
○'81년	스웨덴, 애란
○'84년	영국
※'86년 1월	양모의 수입제한 지역 해제
○'86년	덴마크
※'88년 2월	화란산 원피 수입허용

### ○ 수입위생조건 현황

1) 미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및 대만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위생조건(농림수산부 고시 제88-9호, '88. 3. 5)

#### ○ 대상

- 동물 : 소, 돼지, 면양 및 산양.
- 축산물 : 고기, 뼈, 가죽, 털

2) 애란, 스웨덴산 도입생축 및 축산물 위생조건(농림수산부 공고 제 88-9호, '88. 3. 5)

#### ○ 대상

- 동물 : 소, 돼지
- 축산물 : 육류, 꾀류

3) 영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 조건(농림수산부 고시 제88-10호, '88. 3. 5)

#### ○ 대상

- 동물 : 소, 돼지, 면양 및 산양
- 축산물 : 고기, 꾀류

4)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 조건(농림수산부 고시 제83-53호, '83. 12. 10)

#### ○ 대상 : 자비우육(boiling beef)

5) 덴마크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 조건(농림수산부 고시 제88-11호, '88. 3. 5)

#### ○ 대상

- 동물 : 소, 돼지, 면양 및 산양
- 축산물 : 고기, 꾀류

#### ○ 수입항 : 김해공항과 부산항

6) 소 및 돼지의 정액수입 위생조건(농림수산부 고시 제86-33호, '86. 10. 10)

#### ○ 대상 : 소 및 돼지의 정액

#### ○ 적용국 : 우제류 동물의 수입허용국

7) 소수정란 수입위생조건(농림수산부 고시 제87-10호, '87. 2. 26)

#### ○ 대상 : 소수정란

#### ○ 적용국 : 우제류 동물의 수입허용국

8) 말수입 위생조건(농림수산부 고시 제86-35호, '86.

10. 17)

#### ○ 대상 : 말

#### ○ 적용국 : 수입상대국 전체

9) 화란산 우피(牛皮)수입위생 조건(농림수산부 고시 제88-5호, '88. 2. 6)

#### ○ 국내수입항 : 인천항

○ 검역장소 : 국립동물검역소 인천지소 구내검역창고

## 3. 해외전염병의 국내 유입 경로

해외전염병의 국내 유입경로와 이에 대한 대책을 경로 별로 서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염된 동물의 수입시 검역기간 중 전염병의 잠복기나 불현성감염 등의 요인으로 검사에 색출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경로로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는 수입검역 이전에 수입상대국에 대한 위생조건 강화 및 전염병 비발생 국가로부터 수입이 요망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감염된 축산물의 수입시 국내에 유입되는 경로를 들 수 있는데, 전체적인 소독이 불가능한 육류나 골분 등 식용에 사용하는 축산물의 경우, 해당 바이러스의 분리가 어려워 전염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축산물의 경우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국내 검역과 수입 상대국의 선별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세째, 국제운항 선박 및 항공기의 잔반을 통한 유입경로를 들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현재 국내 국제공항 및 항만의 잔반 처리과정을 볼 것 같으면 양축농가에 직접 반입되는 예가 거의 없지만, 앞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차원에서 동 잔반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가 요구된다고 본다.

네째,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 시험용으로 반입한 균주가 관리부실로 인하여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 전염병이 발생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섯째, 양축가나 수입상에서 귀국시 자가 사용을 목

적으로 밀반입된 생독 예방약을 가축에 접종하였을 경우 독주의 변이로 인한 병원성화로 해외전염병을 유발 시킬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로 특히, 닭 질병의 경우 예상되는 것으로서, 양축가나 약품 수입상의 생독 예방약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여섯째, 기항한 선박으로부터 상륙되는 오염지역, 감염 쥐나 해외여행자 또는 반입되는 물건에 붙어있는 모기 등의 전염병 매개체가 국내에 반입되어 전염병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선기상 검역시 위험지역으로부터 입항되는 외항선의 검역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들 수 있는 유입경로는, 감염된 정액이나 수정란을 통한 경우인데, 정액이나 수정란은 국내 수입검역과정에서 전염병 오염여부의 검사가 어려운 점이 있어 수입 상대국에서 정액이나 수정란의 생산과정중에 엄격한 종축의 선정과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상대국에 수입위생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 최선책이라고 볼 수가 있다.

#### 4.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개방추세와 문제점

현재 우제류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수입허용 국가는 인접국가인 일본이나 대만과 비교하여 볼 때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검역여건과 축산업의 형태 등 여러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현재 원피에 대하여는 서독, 벨기에,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 수입개방을 요청하고 있으며, 핀란드, 브라질, 중공, 프랑스 등의 국가는 간접적으로 자국산 생축(소, 돼지)과 육류에 대한 수입 개방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업 보호라는 가축위생 측면을 경시하고 외교적인 차원에서 교역당사국간에 무역마찰

등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원피 등 수출원자재 용품에 대하여는 국내 수출업체에서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입지역 다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농림수산부 수입금지조치 입장을 공색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 5. 금후 대책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도의 개선과 필요 장비 및 기술 개발 등 사항을 요약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추진방향을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 해외 가축전염병 보고체제의 제도적 장치와 보완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는 전국 가축질병 예찰요원과 축산물 검사원의 질병검색 기술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현재 국가 방역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축질병 혈청검사 사업을 확대하여 해외전염병을 초기에 발견 또는 검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둘째, 해외전염병의 유입 경로별 차단 대책은 이미 상기 4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으며,

세째, 해외전염병에 대한 조사사업 확대와 교역(대상)국내에 지속적인 정보의 교환으로 유사시 수입검역물에 대한 신속한 방역조치와 수입허용국의 확대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네째, 국내에 만약 해외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초기단계에서 동 질병을 박멸, 종식시킬 수 있도록 가급적 살처분정책을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끝으로 수입개방 추세에 대비하여 검역기구 및 시설의 확대를 들 수 있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험지역산 전용 검역시설을 확보토록 하고, 전문검역인력을 양성토록 함과 동시에 검역종료 검역물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국내 방역감독을 연계토록 하여 만일 우리나라 검역기간중 발견되지 않았거나 나타나지 아니한 전염병을 소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